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가단256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종건, 김희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79,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2.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9,66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재 운송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차량 지입차주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면서 선금을 지급하고 매월 운송대금과 선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12.경부터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선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4. 26. 원고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차량번호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에서 현재에 이름, 피고가 C 주식회사에 지입한 상태였음)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18. 3. 13.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목장용지 428㎡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8. 3. 29. 원고의 대표이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기간을 50개월로 하여 선금 반환채무 변제시까지 이 사건 자동차 운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8. 3. 30. E 앞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E은 같은 날 F 주식회사 앞으로 지입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은 선금 반환채무 6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추가로 발생한 선금 반환채무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준 것인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9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록 및 설정등기는 모두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나52101)은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여 그 수익으로 피고의 선금 반환채무를 충당하고 모두 충당되면 위 자동차를 다시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 및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선금 반환채무는 98,052,875원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 중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기각하며, 근저당권설정등록 말소청구는 각하하는 판결을 2021. 2. 5.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1. 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 절차(인천지방법원 G)에서 위 자동차가 매각되어 2021. 10. 20. 원고에게 38,972,935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내지 12호증, 제15, 21, 24, 25 호증, 을 제3, 4, 8, 10, 32, 33호증, 51, 5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금 반환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는바, 피고는 위 선행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21. 1. 15.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98,052,875원의 선금반환채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설정등록에서 담보되는 90,000,000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는 점이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을 배제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1. 10. 20. 위 경매절차에서 38,972,935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금반환채무는 59,079,940원(= 98,052,875원 - 38,972,935원)이 남게 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자동차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가액인 100,000,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선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을 정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닌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변제를 받는 대신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이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이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79,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